제409회 정례회
'23. 6. 9.(금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봉순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3년 5월 26일

○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○ 본 조례의 인용 조문 번호와 용어가 일부 오기되어 조례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

○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며,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○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확대(안 제4조)

○ 단순오기 및 잘못 인용된 조문번호 등을 정비(안 제5조, 제7조)

○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부서 일원화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○ 본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지칭하는 인용 조문 번호와 정책실명제 심의사항을 나열한 호 번호의 오기 부분을 자구수정하여 조례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

○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며, 인용된 조례명의 잘못된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안 제1조, 제2조, 제6조,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,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
< 조례안 자구수정 내용 >

구 분	현 행	개정안	비고
제1조	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	˅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	법령명 앞뒤 띄어쓰기
제2조제1호	결정및	결정 및	띄어쓰기
제6조제5항	위원에 대해서는	위원에게	용어 정비
제8조제4항	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	˅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˅제9조	법령명 앞뒤 띄어쓰기

○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, 제1항 제8호를 "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"으로 개정하여 관리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

※ (현 행) 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
(개정안)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

- 현행 제8호는 "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"으로 되어 있는데,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가 희박함
- 또한,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3제1항[1]에서는 국민신청실명제(도민 + 타시도 주민 신청사업)[2] 및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, 현 조례 제1항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열거하여 대상사업을 한정해 타시도 주민 신청사업 등이 미포함됨
- 따라서, 현행 제8호의 실익이 없는 규정을 "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"으로 개정하여 타시도 주민 신청사업 등을 포함한 그 밖의 필요한 사업으로 대상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○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오기된 호 번호를 순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

※ (현행) 2. 그 밖에 → (개정안) 3. 그 밖에

○ 안 제7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지칭하는 조문 번호를 올바르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임

※ (현행) **제5조**제1항에 → (개정안) **제4조**제1항에

---

1) 제63조의3(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1.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
2.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3.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
4.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5.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
6.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

2)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,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·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한 제도

○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를 총괄부서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

- 현행 조례는 총괄부서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후, 변동사항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는 홈페이지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, 도민 열람 시 불편함이 우려됨
- 따라서, 홈페이지 공개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
○ 안 제9조에서는 인용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
※ (현행)「충청북도 **포상 조례**」→ (개정안)「충청북도 **포상조례**」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 조문 오류사항 및 오기된 호 번호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 이는 조례의 적용과 해석상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

○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등 형식상 미비점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

○ 또한,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확대 및 홈페이지 공개 일원화는 도민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

참고 **정책실명제 개요**

□ 개 요

○ **(의의)** 정책의 투명성·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**주요 정책**에 참여하는 **관련자의 실명**과 의견 **등을 기록·관리**하고 관련 자료 등을 **공개**하는 제도

※ 근거법령 :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제63조~제63조의5

- 주요 정책의 결정·집행과 관련된 담당자 실명, 계획서, 보고서, 회의 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도자료에도 담당자를 적시하여 **책임성** 제고

○ **(적용대상)**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)과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(광역·기초)

○ **(운영절차)** 매년 **'정책실명제 운영지침**(행안부)'에 따라 각 기관에서 **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**, 각 기관 **홈페이지** 게시, 정보공개포털 **통합공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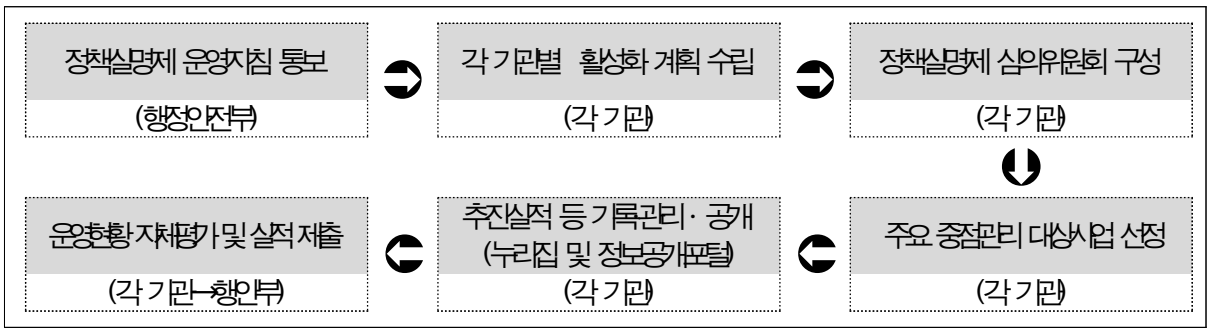

○ **(대상사업 선정)** 국정과제와 국민이 신청한 사업 및 국정현안, 대규모 예산사업,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, 주요 법령 제·개정 사항 등

○ **(공개내용)** 사업명, 사업부서, 담당자, 선정기준, 사업기간, 그간 주요 추진내용, 기안자·검토자·결재자 실명 및 공개문서 원문

중점관리 대상사업 세부 운영 방식

▪**(위원구성)**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(5명이상, 외부위원 50% 이상)

▪**(계획수립)** '정책실명제 운영지침(행안부)' 및 각급 기관별「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」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후보군 마련

▪**(사업선정)**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(대면 또는 서면)하여 대상사업 선정

▪**(국민공개)** 선정된 사업들은 '사업내역서'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시